

ESd.a.4

ESd.b.2

조사보고 97-02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진상 조사활동 의견서

1997. 10. 23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Asia Coalition For Housing Rights-Eviction Watch in Korea

의견서를 내며....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저소득층이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집은 계속해서 강제 철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잔인한 강제철거 상황을 이대로 둔다면 철거되는 주민들의 인권과 주거권은 근본부터 무시당하게 된다. 물론 강제철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남미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대부분 강제철거 사건은 집이 없는 세입자나 무허가 거주자들을 힘으로 쫓아내는 무리한 개발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개발정책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권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결국 공권력이나 법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인권인 주거권을 유린하는 사건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공권력이나 법은 사회적 형평성을 잃게 되었다.

강제철거 감시단은 UN이 주최한 세계주거회의 의제와 아시아 주거권연합의 결의에 따라 구성되어, 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강제철거 감시단 회의(97. 5. 5-12)에서 강제철거 감시활동 원칙을 결정함으로서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강제철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자 아시아 각국의 감시단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서로가 협력하고 있다.

우리 감시단은 금번 행당 1-2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사건을 접하면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 주거권연합 등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각 나라로 하여금 강제철거 당사자에게 항의토록 하였다.

1997. 10. 23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단장 박문수 신부

목 차

- 의견서를 내며
- 진상조사 활동 경과 p 3
-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소개 p 4
-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소개 p 7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 의견

- 97. 9. 30
「행당 1-2 강제 명도집행 절차와 폭력철거 사태」에 대한 의견 p 10
 - 재개발조합-(주)적준용역의 폭력 행위에 대한 의견 p 12
 - 철거되어 노숙(露宿)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p 15
 - 행정 당국의 폭력 철거사태 대처에 대한 의견 p 16
 - 세입자 주민들에 대한 정책 의견 p 18
 - 결 론 p 20
-
-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 p 22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 p 23

진상 조사 활동 경과

- 1997년
- 10. 1(수)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상황 및 사태개요서 접수
 - 10. 2(목)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1차 회의
행당 1-2 폭력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10. 3(금) 진상조사 활동 1 / 행당 1-2 피해 주민 방문 면담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2차 회의
 - 10. 7(화) 진상조사 활동 2 / 성동구청 방문 면담
 - 10. 8(수) 진상조사 활동 3 / 성동경찰서 방문 면담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3차 회의
 - 10. 9(목) 진상조사 활동 면담 결과서 발송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행당 1-2 주민)
 - 10. 10(금)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4차 회의
 - 10. 12(일)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진상조사 활동 1차보고서 발간
 - 10. 14(화) 진상조사 활동 4 / 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면담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5차 회의
 - 10. 16(목) 1차 보고서 발송 -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 기관
 - 10. 18(토) 피해 주민 진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10. 20(월)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6차 회의
 - 10. 23(목)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진상조사 활동 의견서 발간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소개

(Asia Coalition For Housing Rights-Eviction Watch in Korea)

I. 경 과

- A. 아시아 주거권 연합(ACHR) 결성(1988) 이후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강제철거 감시단 활동 시작
- B. 제2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Ⅱ, 1996. 6.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시아 Net-work을 통해 강제철거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함
- C. 강제철거 감시단(Eviction Watch) 아시아 지역회의(1997. 5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국의 강제철거 감시단 결성 결의
- D.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가 주관하여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결의(1997. 5. 23)

II. 배 경

- A. 1980년 초부터 국내의 재개발 지역에서 계속적인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있음(최근의 사례 ; 미아 1, 6, 7동, 행당 1동, 이문동, 전농동 등)
- B. 1997. 4. 3 이문동, 행당 1동 강제 철거 이후 강제철거 사태가 더욱 노골화 되고 있음
- C. 1997. 9. 30 생가(生家)를 무자비하게 강제로 폭력 철거하여, 지역 주민들이

노상에서 숙식하는 반인간적인 사태가 행당 1동 재개발 지구에서 발생함
D.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활동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재확인됨

III. 감시단 활동 목적

- A. 강제철거 관련자(주민, 재개발조합, 경찰서, 구청)에 대한 사태의 객관적인 조사 활동
- B.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대정부 활동 및 대사회 여론 조성
- C. 반인간적인 강제철거 사태의 예방 활동
- D. 철거 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와 해당자 고발 조치 활동
- E.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활동

IV. 감시단 구성

- A. 명칭 : 아시아 주거권 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 B. 구성 : 박문수(신부, 감시단 단장,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한경섭(부단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홍(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오용식(영은교회 담임목사,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 선
교회원회 위원)
김성훈(돌산교회 담임목사,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 전 사무국장)
안광훈(골롬반회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
이기우(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오기백(골롬반회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

김동주(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
손인숙(성심 수녀회 관구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김경남(목사,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하성규(중앙대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혜경(관악구 구의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박재천(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총무)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소개

I. 경 과

- A. 행당 1-2재개발지구 폭력철거 사태 상황 및 진상조사 요청 접수(97. 10. 1)
- B. 아시아 주거권 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1차 회의(97. 10. 2)
- C. 행당 1-2 폭력 철거사태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II.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 조사 활동 목적

- A. 강제철거 관련자(주민, 재개발조합, 경찰서, 구청)에 대한 사태의 객관적인 조사 활동
- B.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대정부 활동 및 대사회 여론 조성
- C. 반인간적인 강제철거 사태의 예방 활동
- D. 철거 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와 해당자 고발 조치 활동
- E.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활동

III. 조사위원회 구성

A. 명칭 : 감시단, 행당 1-2 폭력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

B. 구성 : 박문수(신부, 위원장,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서강

대 사회학과 교수)

한경섭(부위원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신부, 부위원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성훈(돌산교회 담임목사, 부위원장,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
전 사무국장)

오용식(영은교회 담임목사, 부위원장,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도시
농어촌 선교회원회 위원)

김진홍(위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동주(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

안광훈(위원, 골룸반회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

손인숙(위원, 성심 수녀회 관구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김혜경(위원, 관악구 구의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박재천(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총무)

신만수(진상조사위원회 서기)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 의견

우리 감시단은 1997년 10월 1일 <97. 9. 30 행당 1-2 재개발지구 강제 명도집행에 의한 폭력철거 사태>의 상황과 사태개요서를 접수받으면서, 주민 대표 하수복 외 세입자 주민들부터 진상 조사 활동을 요청받았다. 이에 감시단 단장 박문수는 97년 10월 2일 강제철거 감시단 긴급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결과 금번 사태로 철거된 주민들의 인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조사위원회는 97년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하여 1) 행당 1-2 지구 철거된 주민 2) 성동구청 3) 성동경찰서 4) 행당 1-2 재개발조합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이상의 면담 조사 활동과 면담 결과서를 토대로, 우리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금번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아시아 주거권연합 등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97. 9. 30

「행당 1-2 강제 명도집행 절차와 폭력철거 사태」에 대한 의견

- 금번 사태는 관련 기관의 중언으로 볼 때, 행당 1-2 재개발 조합장이 지구내 세입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폐소한 주민들이 세입자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가옥명도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강제 명도집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살고있는 집을 당사자 주민의 확인 절차없이 폭력을 동원하여 철거한 사태임이 분명하다.
- 폭력을 동원하여 철거한 사태라 함은, 강제 명도집행 규모가 성동경찰서 병력 3개중대, 재개발조합과 계약 맺은 (주)적준용역 소속 철거반 300여명, 강제 명도집행 일일고용원 200여명으로, 22개동 27가구와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 1동을 명도집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제된 상태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집 행되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들의 증언과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김동현(남/ 6주 상해), 김용길(남/ 3주 상해), 김현자(여/ 3주 상해), 강기목(남/ 2주 상해), 김종수(남/ 2주 상해), 이삼순(여/ 2주 상해), 임동춘(남/ 2주 상해), 변준현(남/ 2주 상해), 권혁주(남/ 2주 상해), 황옥순(여/ 2주 상해) 등 그 외 다수의 주민이 폭행을 당하여 치료증이거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히 강제된 상태의 폭력상황이었음이 입증된다 하겠다.
- 특히 주민 중 여자 주민들에게 위 아래 옷을 벗기고 성적 치욕을 가하였으며,

등 뒤에서 젖가슴과 팔을 폭행하고, 이불을 뒤집어 쐬워 짓밟고 음부를 쥐어뜯는 파렴치한 행위와 입에 담지못할 성폭언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으로 볼 때, 법원 판결에 의한 법적 강제 명도집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성적 모멸을 가한 것이라면, 이는 법의 이름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면서 법집행을 강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더우기 당사자 주민들을 원천 차단하여 확인 절차없이 27가구의 집들을 철거하여 아이들의 책, 귀중품, 일부 살림도구가 그대로 묻히도록 철거를 강행한 것은, 적법한 명도집행이 아닐뿐더러 밖으로 들어낸 살림살이조차도 도난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버리다시피 방치한 것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리를 박탈함과 다름없다.

○ 더더욱 철거당한 주민들이 망연자실하여 허탈해 하면서 임시 잠자리나마 마련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천막을 치려하자, (주)적준용역 철거반들이 "누구든지 천막을 치면 다 목을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물고 천막 칠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파 버리는 등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을 볼 때, 이는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있을 수 없는 횡포이며 임시 잠자리마저 거부하는 비인권적인 경우라 할수 있다.

○ 따라서 행당 1-2 강제 명도집행 절차 폭력철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법적 횡포임과 동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주거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규모 폭력 철거사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 재개발조합 - (주)적준 용역의 폭력 행위에 대한 의견

○ 해당 1-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은 1995년 11월 24일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사태를 볼 때 재개발조합은 세입자 주민들에 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입자 주민들과 1997년 5월 16일 합의한 바에 따르면, 명도소송 승소의 경우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볼 때, 정상적인 대화 방법을 일방 파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96년 7월 23일 합의서, 97년 5월 16일 합의서, 같은 날 조합장 각서, 97년 6월 13일 합의서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재개발조합이 합의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드러나지 않으며, 금번 사태로까지 몰고 간 책임이 재개발조합에 있다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보아 세입자 주민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금번 폭력사태로 철거된 주민들이 잠자리를 잊어버리고 노숙(露宿)하고 있음에도, 지난 9월 초 이후 폭력사태 당일까지 조합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등 전혀 모 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고, 재개발사업의 지도, 감독기관인 성동구청에서도 구청의 조정이나 행정 지시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 함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원만한 대화보다는 (주)적준용역으로 하여금 폭력적인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심정이 역력함을 확인할 수 있겠다.

○ 재개발조합은 (주)적준용역과 철거계약 관계에 있다. 철거 계약 관계가 있다하

여 재개발조합은 철거과정상 일어나고 있는 폭력성이나 주민 피해 등의 책임을 (주)적준용역으로 떠 넘기고, (주)적준용역은 상시적인 공포 분위기와 폭력 등으로 막무가내 거주 주민에게 행패를 일삼아 마치 재개발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행사하여 폭력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겠다.

○ (주)적준용역은 97년 4월 현재, 서울시내 96개의 재개발지구 중 42개 지역에서 철거용역을 맡아, 상시 폭력을 행사하여 전농동 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5일 주민 박순덕씨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에도 용산구 도원동 지역에서 주민들을 집단 폭행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에서는 방화사건까지 있었다고 주민들은 진술하고 있다.

○ 이처럼, 해당 1-2 지구에서만도 96년 12월 9일 폭력사태, 97년 4월 3일 폭력사태, 97년 9월 1일, 2일, 5일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금번 대규모 폭력사태를 발생케하여 엄청난 주민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은 순수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마치 조직 폭력집단으로 인식되게 행동하고 있다.

○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주)적준용역 철거반들 다수가 2-3명의 폭력 전과자이며,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할 수 없기에 철거지역에서 기생하는 집단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때, (주)적준용역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주식회사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파탄에 이른 회사라 여겨진다.

○ 특히 금번 사태의 피해 주민이 수십명에 이르고 심지어 연약한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성적 폭행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언으로 주민들을 질리게 하여, 짓이기고 밟으며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증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인간적인 행위

임이 분명하다.

○ 한편 “사람이 죽어도(전농동 철거 주민) 우리는 까딱하지 않는다” “죽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라! 죽여 주겠다” 등 이보다 심한 욕설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는 증언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 따라서 (주)적준용역 철거반은 해체되어야 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 여겨지며, 더더욱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공사업인 재개발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습적인 폭력, 폭언을 일삼는다면, 사업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반인륜적인 폭력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철거되어 노숙(露宿)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 폭력적으로 강제명도 집행을 당하여 살고있던 집이 철거되고 살림살이가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주거권리와 인권이 박탈당한 상태라 인정된다. 더구나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집을 잃고 길바닥에서 먹고 자야한다면 그 상황은 더더욱 비참한 것이다.

○ 폭력을 당하면서 집을 철거당한 것 자체가 참으로 억울한 일인데 그나마 임시거처를 위해서 천막을 쳐 이 위급상황을 넘겨보고 싶은 피해 주민들에게 천막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횡포와 천막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놓는 행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최후까지 주거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세입자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주거권리가 보장되도록 재개발조합 등 관계 기관에 그 대책을 요구하여 왔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임시 주거권리가 확보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요구였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법에 호소하여 강제 명도집행 방식으로 폭력 철거함으로서 그나마 있던 주거권리가 침해되고 임시천막까지 저지하는 것은 인권유린을 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감독기관인 구청과 경찰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가해 당사자인 재개발조합은 지체없이 최우선적으로 이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행정 당국의 폭력 철거사태 대처에 대한 의견

○ 금번 폭력 철거사태 지역의 행정당국은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로, 구청은 강제명도 집행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서는 관할 법원의 공식요청이 있었으므로 강제명도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불상사 등을 방지하고자 경찰 병력을 배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구청은 강제 명도집행이 시작된 후에야 알게되어 관련 직원을 현장에 보냈다는 것이며, 경찰서는 배치된 경찰병력 외에 관련형사 직원들을 현장에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증언이다.

○ 본 위원회가 방문 면담 과정에서 얻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강제명도집행은 관할 법원의 소관이므로 관할 행정당국으로서는 그 집행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모른다는 것이며, 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 법원에게 있다는 결론을 얻게 하고 있다.

○ 이 증언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강제 명도집행 현장에 있던 구청 관련 직원과 경찰서 관련 직원들이 폭력으로 주민 상해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폭력 상황없이 명도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찰관계자의 인식은, 사태 현장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이치에 맞는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

○ 특별히 경찰에 대해서는 폭력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막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외면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으로 볼 때, 주민들의 생명과 재

산을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경찰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폭력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 더우기 폭력 철거사태 이후 수일이 지나도록 집이 없어진 주민들을 노숙하게 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도의적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세입자 주민들에 대한 정책 의견

○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서는 재개발 지구내 세입자 대책으로서 주거대책비 또는 지구내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서 그 대책이 갈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다. 이 선택의 기준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 현재 당해 구역안에서 3월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 한정한다.

○ 행당 1-2 재개발지구는 최초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87년 3월 10일에 있었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 결정은 94년 6월 16일 고시되었다.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이 조합은 그 시행인가를 95년 11월 24일 득하였다. 최초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이후, 8년 8개월만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셈이다. 따라서 세입자 대책의 기준일이 최초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적용하여 86년 12월 10일 이전 거주자부터 해당자로 분류하게 되었다.

○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8~10년 주민등록 등재하여 살았던 세입자 주민들이 세입자 대책에서 제외되어 비대책자(미해당자)가 되었다. 타 지구와 비교할 때 행당 1-2 세입자 주민은 당연히 대책자가 되어야 함에도 비대책자로 분류되는 사례여서 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타 지구의 경우 평균 2~3년 거주하던 대책자가 되기 때문이다.

○ 타 지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책 기준일을 사업계획 변경 고시일로 적

용한다면 그 고시일이 94년 6월 16일 이므로 94년 3월 16일 이전 거주한 세입자 주민이라면 대책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이나 이 조합의 정관에서 대책 기준일을 최초 사업계획 결정고시일로 그 기준일을 삼아 대다수 세입자 주민들을 비대책자로 분류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 이에 우리 감시단 위원회는 성동구청이 업무지침과 조합정관상 원칙을 변경할 수 없어 불가하다고 하나,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업무지침과 조합 정관에 앞서 주민들의 주거권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우선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국내외 인권적 결의들을 존중하여 임시주거대책을 포함하는 주거 권리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행정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결 론

우리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행당 1-2 재개발 지구에서 일어난 엄청난 폭력철거 사태를 접하여, 면담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면담 결과와 채증 또는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각 분야의 종합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아래의 의견을 제안함으로 진상조사 활동 제1차 보고서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1993)는 <인간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강제철거는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가 행해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1994)는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천명>함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국제연합의 인권 정신에 따라 금번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 금번 사태는 법에 의한 강제 명도 집행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집행 형식이 폭력을 수반하고 심지어 성추행과 성폭언까지를 서슴지 않아 가히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 집행을 강행하고, 결국 법의 이름으로 법을 어기고 마침내 주민들의 주거권과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면 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거주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 당국이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며, 폭력 상황의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의 보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어떤 사유든 강제로 철거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안정을 취하도록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권고에 따라 금번 사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반드시 이 권고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다른 재개발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내에 폭력 철거반들이 상주하면서 (주)적준용역과 같이 주민들을 공포로 내몰고 잣은 폭력 철거와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비인간적인 만행에 가까운 횡포들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 어떤 경우라도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

□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1993년)

1. 인간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강제철거는 명백히 인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가 행해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한다.
3. 강제철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적인 주거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주민(집단)의 효율적인 참여, 협의 그리고 협상을 통해 강제철거로부터 보호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강제철거를 당한 모든 주민과 공동체에 대하여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 보상 혹은 적정하거나 충분한 대안적 거처(혹은 부지)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이해관계를 지닌 주민 및 집단의 상호 만족스러운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유엔 사무총장은 이 결의안이 세계 모든 정부, 유엔 산하기관, 지역 및 범정부 기관, 민간단체, 커뮤니티 단체에 권유하여 실행되도록 한다.
6. 유엔 사무총장은 실제 강제철거에 관한 각국의 사례분석 보고를 취합하여, 이를 국제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분석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제50차 인권위원회 회의에 제출하도록 한다.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제50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결정하며, 강제철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1994년)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3. 정부는 영향력있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참여 자문 협상에 기반하여 강제철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기타 모든 조치들을 채택하고 강제철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모든 정부는 영향력있는 단체들과 사람들과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강제철거된 지역과 개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토지나 적정한 거주시설을 즉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아시아 주거권 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Asia Coalition For Housing Rights-Eviction Watch in Korea

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ILM관 한국도시연구소 내

전화: 701-9004, 017-233-3068/ 전송: 701-9004/ 천리안: CONET, E-mail; conet.cholian.dacom.co.kr